# 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. 12.

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
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2월 일

산업건설위원회

####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현행규정을 일부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인용 법령을 정비함(안 제1조).

나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정함(안 제6조).

## 3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2006. 1. 1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과, 2006. 11. 10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」 개정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#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

-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명을 정비 함.
-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정비 함.
- 안 제5조, 제7조, 제8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용어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함.
-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변경 함.

####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6. 1. 1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, 2006. 11. 10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촌지도자 및 명품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・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
- 안 제10조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」 제4조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 명칭변경 안에서는 "분임기금운용관을 담당농촌지도사"로 "기금출납원은 농촌지도자 담당자"로 지정하고 있으나,
- 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」 제4조 제1항에서는 분임기금운용관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기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과 달리 과체제로 운영되지 않는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과 기관실정 등을 감안하여 회계관직 지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